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963
----------	-----

제출년월일 : 2001. 3.

제 출 지 : 안 산 시 장

### □ 제 안 사 유

- '98. 2. 27일 개장 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고잔벌 신도시 입주 등에 따른 물량증가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쓰레기 오염문제, 주차난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뿐 아니라 시장의 조기 활성화에도 지해되고 있어
- 조립식 2단 3상의 복합빌딩(연면적 7,140.52㎡ : 2,160평)을 신축하여 증가한 물량 및 이용객을 수용하고, 입주 중·도매인들의 매장 협소에 따른 불만과 이용시민들의 주차난 등 불편 해소로 선진도매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함.

## □ 주 요 내 용

### 가. 취득재산 (1건)

#### 1) 농수산물도매시장 복합빌딩 신축

○ '98. 2. 27일 개장 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고잔별 신도시 입주 등에 따른 물량증가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쓰레기 오염문제, 주차난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뿐 아니라 시장의 조기 활성화에도 저해되고 있어 복합빌딩을 신축하고자 함.

## □ 사업 현황

- 위 치 : 안산시 이동 528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남쪽)
- 신축면적 : 7,140.52㎡ (2,160평 각 층별 720평)
- 시설규모 : 철골콘크리트 조립식 2단 3상
  - 1층 : 야채 및 수산부류 경매장
  - 2층, 3층 : 화물차 및 자가용 주차장
- 소요예산액 : 2,554백만원 (국비 - 1,500백만원, 시비 - 1,054백만원)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 84백만원
  - 시설비 : 2,416백만원
  - 감리비 및 부대비 : 54백만원

□ 추진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01. 3월
- 지방투·융자 심사 : 2001.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01. 4월
- 2001년 제1회 추경사업비 확보 : 2001. 4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01. 9 ~ 12월

□ 주관부서 의견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89년도 사업계획 입안 당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현재의 시설을 갖추고 개장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 입안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거래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이 부족하여 노상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을 세워 임시매장으로 운영하는 등 매장 부족 문제점 해소와 도시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복합빌딩을 신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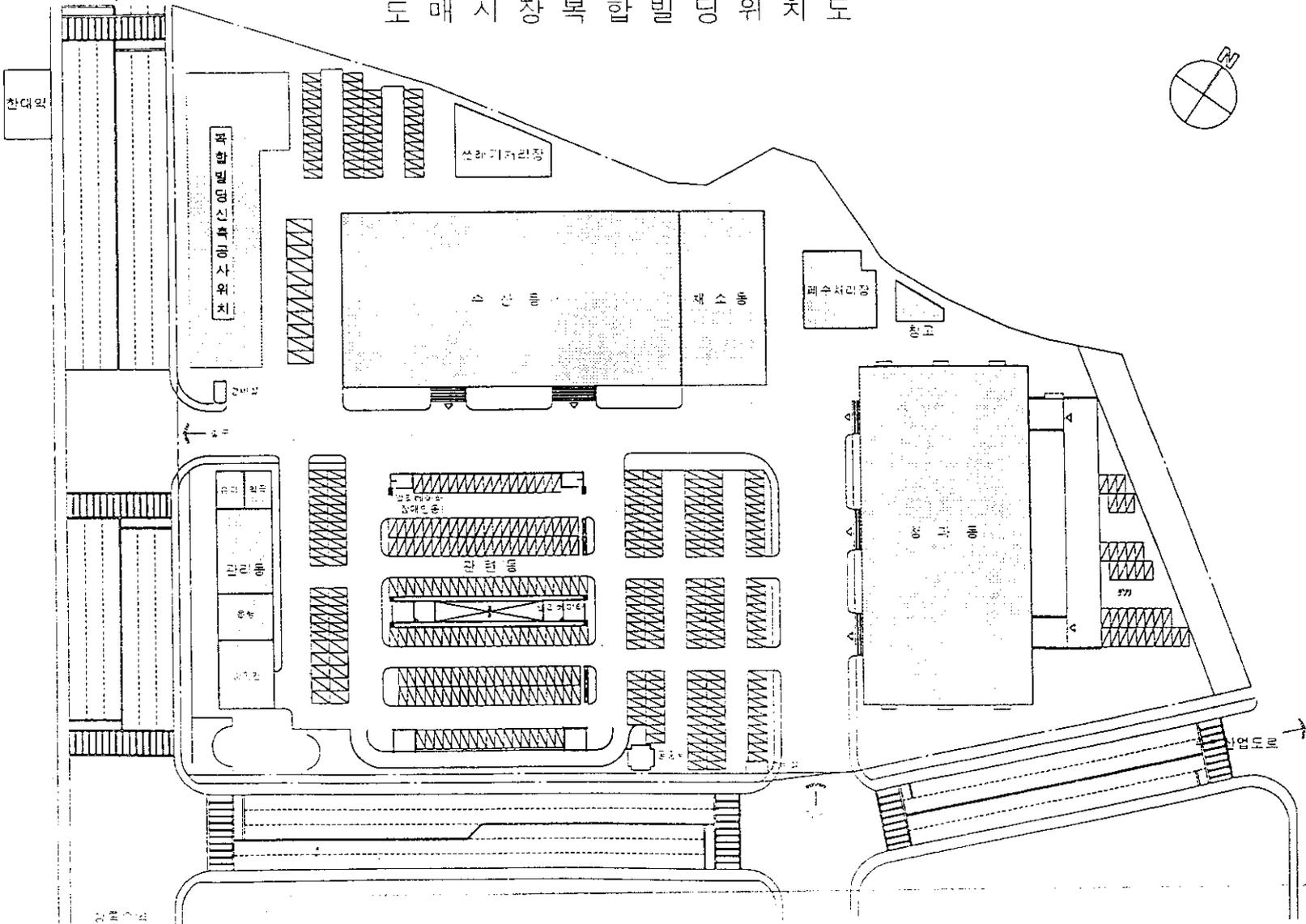
※ 복합빌딩 신축 위치도 : 붙임

□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붙임

- 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1)
- 나. 2001년도 취득재산 목록 (7-2)

□ 관계법령 발췌내용 : 붙임

# 도매시장복합빌딩위치도



#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01년도 관리계획변경총괄표 (7-1)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건	7,140.52	2,554.000				1건	7,140.52	2,554.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7,140.52	2,554.000				1건	7,140.52	2,554.000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열 실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 □ 관계법령 발췌내용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자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 ○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